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29

발의연월일: 2025. 3. 28.

발 의 자:전진숙・이인영・안도걸

양부남 · 김정호 · 박희승

김윤덕 · 허종식 · 박 정

윤후덕 · 오세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인구 증가로 재산 갈취, 경제적 방임·학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고령자에 대한 공공차원의 돌봄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재산관리에 취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재 실효성 있는 정책은 부족한 실정임. 또한 민간신탁상품의경우 재산관리 지원 수단 위주이고, 이 또한 자산가 중심의 영리 신탁위주로 공급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신탁 서비스를 도입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등).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5(재산관리 지원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 또는 그후견인의 신청에 따라 일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소유한 재산의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절차, 지원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계약 기재사항, 재산 관리·운용의 범위와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 외에 보다 구체적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내용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제12조의5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업무를 위탁할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위탁받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

공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12조의5(재산관리 지원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 경
	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
	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
	람 또는 그 후견인의 신청에
	따라 일상을 안정적으로 유지
	할 수 있도록 소유한 재산의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하
	는 서비스(이하 "재산관리 지
	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u>수 있다.</u>
	②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
	공 절차, 지원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계약 기재사
	<u>항, 재산 관리·운용의 범위와</u>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u> 정한다.</u>
	③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 사항 외에 보다 구
	체적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내용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 간

제20조(위임과 위탁) ①·② (생략)

<신 설>

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20조(위임과 위탁)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생」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제12조의5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국민연금공단은 위탁받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의 의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